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위원장 조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위원장 유호림)

담 당 : 경실련 정치입법팀 T. 02-3673-2141 (서휘원 팀장)

제 목 :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총 19매)

보도일자 : 2024.09.26.(목) (오전 10시 30분)

배포일자 : 2024.09.26.(목)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2)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일시 : 2024.09.2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취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조사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경실련 주장 : 조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식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생중계(www.youtube.com/withccej)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48명 중 16명(3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재산 인당 평균 16.5억 원, 최고는 김태효 84.6억 원
- 종부세 대상 16명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 19.2억 원, 종부세는 약 133만 원
- 이미 한 차례 종부세 완화로 종부세 대상자 20명에서 16명으로 감소
-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는 1.8%로, 종부세 완화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 아냐
-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경실련은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에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종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 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종부세 감면의 혜택이 일반 중산층이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특정 소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 및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조사대상자 조사발표’ 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대비하여 종부세 대상자 및 납부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2024년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

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전세 등을 제외)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 9,885만 원(평균 16억 4,997만 원)입니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 1,148만 원(인당 평균 37억 2,115만 원)이고, 상위 3명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0억 5,800만 원으로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중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억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표 1]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공시가 기준) 상위 10명

* 단위 : 천원

		건물	토지	총합계
1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58,864	0	8,458,864
2	정진석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4,058,000	878,192	4,936,192
3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70,000	0	4,170,000
4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3,584,726	0	3,584,726
5	최원호 대통령비서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	2,975,216	0	2,975,216
6	최중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325,000	1,531,190	2,856,190
7	이경우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2,800,000	0	2,800,000
8	성태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541,443	0	2,541,443
9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2,507,499	14,145	2,521,644
10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1,905,063	462,143	2,367,206
상위 10명 합계		34,325,811	2,885,670	37,211,481
상위 10명 평균		3,432,581	288,567	3,721,148
본인 배우자 부동산 보유 신고 44명 합계		66,329,279	6,269,572	72,598,851
본인 배우자 부동산 보유 신고 44명 평균		1,507,484	142,490	1,649,974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됩니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 원(인당 평균 19억 2,49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 원(인당 평균 133만 원)입니다. 임대업자 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감안 하면, 실제 예상 세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 1위로 나타났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우 부동산재산으로 84억 6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종부세는 상가 재산(53억 9천만 원) 등을 제외한 주택 재산(17억 원)에 한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과 상가업무 빌딩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크게 차이이기 때문입니다.1)

1) 종부세는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상, 상가업무용 빌딩은 건물은 부과제외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기준 80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있음

[표 2] 대통령실 중 종부세 대상자의 종부세 예상액

* 단위 : 천원

성명	주택 수	비고	주택 신고가액			종부세 예상액		
			본인	배우자	세대 합계	본인	배우자	합계
정진석 비서실장	1	본배(서울 강남)	2,029,000	2,029,000	4,058,000	3,633	3,633	7,266
이경우 디지털비서관	1	본배(서울 용산)	1,400,000	1,400,000	2,800,000	1,044	1,044	2,088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2	본배(서울 용산), 배(서울 용산)	873,581	1,633,918	2,507,499	0	1,832	1,832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	2	본배(서울 강남), 본(서울 강남)	1,517,069	716,438	2,233,507	1,435	0	1,435
최지현 인사비서관	1	본배(서울 서초)	394,000	1,576,000	1,970,000	0	1,761	1,761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2	본배(경기 고양) 배(인천 서구)	458,500	1,441,382	1,899,882	0	1,177	1,177
정승연 정부2비서관	2	본배(인천 연수) 배(서울 서대문)	407,000	1,424,000	1,831,000	0	1,118	1,118
이동욱 민정비서관	2	본배(서울 송파) 본배(세종 해밀)	912,000	912,000	1,824,000	22	22	44
한정화 법률비서관	1	본배(서울 양천)	1,151,700	593,300	1,745,000	531	0	531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1	본(서울 서초)	1,699,000	0	1,699,000	1,150	0	1,150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1	본(서울 양천)	1,609,000	0	1,609,000	942	0	942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2	본(서울 성동) 본배(경기 용인)	1,195,200	324,800	1,520,000	577	0	577
성태윤 정책실장	1	배(서울 용산)	0	1,338,116	1,338,116	0	318	318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1	본(서울 서초)	1,332,000	0	1,332,000	304	0	304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	2	본(세종 나성) 본(경남 창원)	1,226,400	0	1,226,400	765	0	765
최종균 저출생대응비서관	1	본(서울 서초)	1,205,000	0	1,205,000	12	0	12
종부세 대상자 16명 전체 합계			17,409,450	13,388,954	30,798,404	10,415	10,905	21,320
종부세 대상자 16명 평균			1,088,091	836,810	1,924,900	651	682	1,333

이렇듯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 대통령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기존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대상자인 정책 입안자 및 정책 추진자들에 의해 형해화 되어 왔습니다. 단독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에 가까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를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 원(인당 평균 318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 원(인당 평균 63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 원(인당 2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공동명의자 4명의 경우 공동명의 기본 공제액(인별 9억, 총 18억) 적용 시 종부세 예상액 총 1,165만 원(인당 291만 원)으로 나타나, 단독명의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 적용 시 종부세 예상액 총 2,589만 원(인당 647만 원) 대비, 1,424만 원(인당 356만 원) 가량 절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종부세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형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정치권력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 미만으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반면,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하는 데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라!
2.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라!
3.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하라!
4.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하라!

*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정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상위 1%를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고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해 발표 중입니다.

[표 3]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요약)

	‘21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	현재 기준 종부세 대상자	현재 기준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액	현재 기준 종부세 예상 납부액
장·차관 (38명)	21명 (55.3%)	18명 (47.4%)	인당 25억 9,232만 원	인당 356만 원
대통령실 (48명)	20명 (41.7%)	16명 (33.3%)	인당 19억 2,490만 원	인당 133만 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I. 분석 목적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도입 이후부터 정치권에서는 종부세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며 종부세를 완화해왔음.
- 2022년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종부세 후퇴가 예고됨.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부자 감세’라는 정책 방향 아래, 2022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조정했으며,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완화시켜 왔음.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 하향 등을 통해 종부세를 간접적으로 완화시켜 왔음.
- 김기야 대통령은 2024년 6월 17일 상속세 완화와 함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함. 이러한 정부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 또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는 등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움.
-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라는 이유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종부세의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그 자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또한 우리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 정책의 근거에는 의원 자신의 이해관계와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지역구민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됨.

- 경실련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 및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 장관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발표(2024.08.29.)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조사발표를 진행함. 이를 통해 부동산 부자들이 대거 포함된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가 결국 중산층이 아닌 소수 기득권을 위한 특혜 정책임을 알리고, 종부세 완화 중단을 촉구하고자 함.

II. 조사 내용과 방법

- 본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함. 조사는 9월 1일 이후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함(※ 별첨: 조사 대상 명단).
-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 조사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됨.
 -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주택 수에서 제외함.
 - * 종합합산 토지 및 비주거용 건물의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조사는 제외함.
-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본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 보유 실태
 2. 종부세 기준 완화(2021년 → 2023년)에 따른 예상 대상자 수의 변화
 3.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 및 공동명의를 통한 세액 감면 혜택

[표 1] 주택 종부세 과세 방법·기본공제액 변화

구분	‘05년	‘06~08년	‘09~18년	‘19~20년	‘21~22년	‘23년
과세방법	인별합산	세대별합산	인별합산*	인별합산	인별합산	인별합산
기본공제액 (1세대 1주택)	9억원	6억원	6억원 (9억원)	6억원 (9억원)	6억원 (11억원)	9억원 (12억원)

*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출처 : 기획재정부

- 조사는 각 시기별 기본공제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분석함. 현재 종부세 대상자의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사용하여 모의 계산함. 이 계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등은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재산세 변동, 세 부담 상한 등 반영되지 않았음.

[표 2] 종부세 계산방식 ('23년 이후)

①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	
② 공제액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60%
④ 과세표준	(①-②)X③
⑤ 세율*	아래 참고
⑥ 재산세 공제 전 종부세 금액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⑧ 산출세액	⑥-⑦
⑨ 세액공제(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시
⑩ 종합부동산세액	⑨-⑧
⑪ 농어촌특별세액	⑩X20%
⑫ 납부할세액	⑩+⑪

[그림 1] 종합부동산세 세율('23년 이후)

< 개인 >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III. 분석 결과

1. 대통령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보유 현황

- 조사대상자 중 본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이는 44명임. 이들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 9,885만원(평균 16억 4,997만원)임.
- 상위 10명의 본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 1,148만원(인당 평균 37억 2,115만원)임.

[표 1]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공시가 기준)

* 단위 : 천원

		건물	토지	총합계
1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58,864	0	8,458,864
2	정진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4,058,000	878,192	4,936,192
3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70,000	0	4,170,000
4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3,584,726	0	3,584,726
5	최원호 대통령비서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	2,975,216	0	2,975,216
6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325,000	1,531,190	2,856,190
7	이경우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2,800,000	0	2,800,000
8	성태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541,443	0	2,541,443
9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2,507,499	14,145	2,521,644
10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1,905,063	462,143	2,367,206
상위 10명 합계		34,325,811	2,885,670	37,211,481
상위 10명 평균		3,432,581	288,567	3,721,148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보유 신고 44명 합계		66,329,279	6,269,572	72,598,851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보유 신고 44명 평균		1,507,484	142,490	1,649,974

- 이 중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를 신고한 이는 42명이며, 이들의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555억 5650만원(인당 평균 13억 2,277만원)임.
- 상위 10명의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을 보면, 총 264억 8025만원(인당 평균 26억 4803만원)임.

[표 2]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신고가액(공시가 기준)

* 단위 : 천원

		주택 개수	주택 신고가액
1	정진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1	4,058,000
2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3	3,566,400
3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2	3,072,523

4	이경우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1	2,800,000
5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	2,541,443
6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2	2,507,499
7	정호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3비서관	2	2,233,507
8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1	1,970,000
9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2	1,899,882
10	정승연 대통령비서실 정무2비서관	2	1,831,000
10명 합계		18	26,480,254
10명 평균		1.8	2,648,025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신고 42명 합계		60	55,556,504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신고 42명 평균		1.43	1,322,774

- 주택 수 기준으로 보면, 무주택자가 6명(4.17%), 1주택자가 26명(54.17%), 2주택자가 14명(29.17%), 3주택자가 2명(4.17%)임.

[표 3]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수 현황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전체
6명	26명	14명	2명	48명
4.17	54.17	29.17	4.17	

- 한편, 토지 재산을 보면, 본인 배우자 명의 토지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62억 6957천만원(인당 평균 3억 54831만원)임.
- 상위 10명의 본인 배우자 명의 토지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61억 4,119만원(인당 평균 6억 1,412만원)임.

[표 4] 본인 배우자 명의 토지 신고가액(공시가 기준)

* 단위 : 천원

		전, 밭, 임야	대지, 창고용지, 도로	총합계
1	최종균 저출생대응비서관	1,440,500	90,690	1,531,190
2	왕윤중 국가안보실 제3차장	910,851	560,218	1,471,069
3	김명연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1,041,163	92,783	1,133,946
4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878,192	0	878,192
5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337,946	124,197	462,143
6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267,449	0	267,449
7	이인배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0	130,000	130,000
8	양성호 국정과제비서관	0	96,674	96,674
9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95,591	0	95,591
10	김용진 대외협력비서관	74,938	0	74,938
10명 합계		5,046,630	1,094,562	6,141,192
10명 평균		504,663	109,456	614,119
본인·배우자 명의 토지 보유 신고 18명 합계		5,175,010	1,094,562	6,269,572
본인·배우자 명의 토지 보유 신고 18명 평균		287,501	60,809	348,310

2. 현재 기준 종부세 대상자 및 종부세액

- 현재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준은 9억 원임(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48명 중 16명(33.33%)임.
-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 원(인당 평균 19억 2,490만 원)에 해당함. 이에 대한 종부세 예상액은 총 약 2,132만 원(인당 평균 약 133만 원)으로 추정됨. 따라서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 대비 종부세 납부액은 0.07%에 불과함.
- 이러한 종부세액은 임대업 감면과 조정대상지역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세액은 더 적을 것임. 또한, 아래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혹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를 통한 절세 혜택 등은 미적용 되었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됨.

[표 5] 대통령실 중 종부세 대상자의 종부세 예상액

* 단위 : 천원

성명	주택 수	비고	주택 신고가액			종부세 예상액		
			본인	배우자	세대 합계	본인	배우자	합계
정진석 비서실장	1	본배(서울 강남)	2,029,000	2,029,000	4,058,000	3,633	3,633	7,266
이경우 디지털비서관	1	본배(서울 용산)	1,400,000	1,400,000	2,800,000	1,044	1,044	2,088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2	본배(서울 용산), 배(서울 용산)	873,581	1,633,918	2,507,499	0	1,832	1,832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	2	본배(서울 강남), 본(서울 강남)	1,517,069	716,438	2,233,507	1,435	0	1,435
최지현 인사비서관	1	본배(서울 서초)	394,000	1,576,000	1,970,000	0	1,761	1,761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2	본배(경기 고양) 배(인천 서구)	458,500	1,441,382	1,899,882	0	1,177	1,177
정승연 정무2비서관	2	본배(인천 연수) 배(서울 서대문)	407,000	1,424,000	1,831,000	0	1,118	1,118
이동욱 민정비서관	2	본배(서울 송파) 본배(세종 해밀)	912,000	912,000	1,824,000	22	22	44
한정화 법률비서관	1	본배(서울 양천)	1,151,700	593,300	1,745,000	531	0	531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1	본(서울 서초)	1,699,000	0	1,699,000	1,150	0	1,150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1	본(서울 양천)	1,609,000	0	1,609,000	942	0	942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2	본(서울 성동) 본배(경기 용인)	1,195,200	324,800	1,520,000	577	0	577
성태윤 정책실장	1	배(서울 용산)	0	1,338,116	1,338,116	0	318	318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1	본(서울 서초)	1,332,000	0	1,332,000	304	0	304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	2	본(세종 나성) 본(경남 창원)	1,226,400	0	1,226,400	765	0	765
최종균 저출생대응비서관	1	본(서울 서초)	1,205,000	0	1,205,000	12	0	12
종부세 대상자 16명 전체 합계			17,409,450	13,388,954	30,798,404	10,415	10,905	21,320
종부세 대상자 16명 평균			1,088,091	836,810	1,924,900	651	682	1,333

- 한편, 우리 국민은 전체 가구 중 약 1.8%만이 종부세 대상자로 파악됨. 2022년 주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이 중 1주택자는 74.2%)이며, 12억 초과 유주택자는 3.0%임. 이를 바탕으로 추정할 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약 1.8%로 예상됨(공동명의로의 경우 18억까지 공제 가능하나, 임의로 12억원을 기준으로 함)

〈표 13〉 가구의 주택소유 현황

주택을 소유한 가구(A)	1223.2만	56.2%
일반 가구 수(B)	2177.4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	비중(%)
0.6억 이하	157.7만	12.9
0.6억 초과~1.5억 이하	316.0만	25.8
1.5억 초과~3억 이하	345.7만	28.3
3억 초과~6억 이하	253.6만	20.7
6억 초과~12억 이하	110.4만	9.0
12억 초과	39.7만	3.2
	1223.2만	100.0%

*출처: 2022년 주택보유현황

3. 종부세 완화(2021년 → 2023년)로 인한 종부세 대상자 변화

-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며, 2023년에 종부세 기준을 기존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이러한 변경으로 종부세 대상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20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 대통령비서실 중 종부세 대상자 변화

* 단위 : 천원

성명	주택 수	비고	주택 신고가액(천원)			2021년 기준 종부세 대상				2023년 기준 종부세 대상			
			세대	본인	배우자	본인 6억	배우자 6억	본인 or 배우자 세대 11억	본인 9억	배우자 9억	본인 or 배우자 세대 12억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1	본배(서울 서초)	1,684,000	842,000	842,000	○	○	○	○	X	X	X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1	본배(서울 성동)	1,650,000	825,000	825,000	○	○	○	○	X	X	X	-
하태원 해외홍보비서관	1	본배(경기 성남)	1,215,000	607,500	607,500	○	○	○	○	X	X	X	-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2	본(세종 나성), 배(경기 성남)	1,104,000	634,000	470,000	○	X	○	○	X	X	X	-

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및 공동명의 혜택

- 한편, 2008년 11월 기존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인별 합산 과세방법이 적용됨. 이로 인해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① 세대 단위로 12억 기본 공제를 받고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단독명의자, 공동명의자 모두 가능)와 ② 인별 9억씩 18억 기본 공제를 받는 경우(공동명의자 가능)를 선택할 수 있음. 단독명의자는 ①을 선택하고, 공동명의자는 ①과 ②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음.
- ① 세대 단위로 12억 기본 공제를 받는 경우,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함. 연령에 따라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의 공제가 이루어지며, 보유기간 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0%의 공제가 적용됨. 원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2020년 12월 29일)를 통해 기존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주어진 1세대 1주택자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② 공동명의를 통해 인별 9억씩 기본 공제를 받는 경우, 총 18억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윤석열 정부에서 기본공제액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표 7]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자 간 기본공제액 차이

	2009~2018년	2019~2020년	2021~2022년	2023년
과세방법	인별합산			
기본공제액	6억원	6억원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9억원	11억원	12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A)	12억원	12억원	12억원	18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B)	9억원	9억원	11억원	12억원
차이(A-B)	3억원	3억원	1억원	6억원

- 대통령실 중부세 대상자 16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총 9명임. 고령자 및 장기보유 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60세 이상 20%와 5년 이상 보유 시 20% 공제(총 40% 공제)를 받는 경우와 70세 이상 40% 공제와 15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를 받는 경우를 적용해보면,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 총 2,861만원(인당 318만원)이지만, 40% 공제시 1,717만원(인당 191만원)이고, 80% 공제시 572만원(인당 64만원)임. 즉,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2,289만 원(인당 약 254만 원) 정도 절세 가능함.

[표 8] 대통령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시나리오

*단위 : 천원

성명	주택 수	비고	주택 신고가액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기준 예상액			최대 공제액(A-C)
			본인	배우자	세대 합계	공제 0%(A)	공제 40%(B)	공제 80%(C)	
정진석	1	본배(서울 강남)	2,029,000	2,029,000	4,058,000	15,847	9,508	3,169	12,678
이경우	1	본배(서울 용산)	1,400,000	1,400,000	2,800,000	6,556	3,940	1,313	5,243
최지현	1	본배(서울 서초)	394,000	1,576,000	1,970,000	2,163	1,298	433	1,730
한정화	1	본배(서울 양천)	1,151,700	593,300	1,745,000	1,320	792	264	1,056
김태효	1	본(서울 서초)	1,699,000	0	1,699,000	1,150	690	230	920
최재혁	1	본(서울 양천)	1,609,000	0	1,609,000	942	565	188	754
성태운	1	배(서울 용산)	0	1,338,116	1,338,116	318	191	64	254
김주현	1	본(서울 서초)	1,332,000	0	1,332,000	304	182	61	243
최종균	1	본(서울 서초)	1,205,000	0	1,205,000	12	7	2	10
합계			10,819,700	6,936,416	17,756,116	28,612	17,173	5,724	22,888
평균			1,202,189	770,713	1,972,902	3,179	1,908	636	2,543

- 한편, 중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총 9명 중 공동명의자는 총 4명임. 이들 4명의 경우, 단독명의시(세대별 기본 공제 12억), 중부세 예상 납부액은 2,589만 원(인당 647만 원)이지만, 공동명의 제도 활용시(인별 기본 공제 9억 원), 중부세 예상 납부액은 1,165만 원(인당 291만 원)으로 계산됨. 즉, 공동명의 제도 활용 1,424만 원(인당 356만 원)을 절세 가능함.

[표 9] 대통령실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시 절세 시나리오

*단위 : 천원

성명	주택 수	비고	주택 신고가액			단독명의 12억 공제시 (A)	공동명의 18억 공제 적용시			절세 예상액 (A-B)
			본인	배우자	세대 합계		본인	배우자	합계 (B)	
정진석	1	본배(서울 강남)	2,029,000	2,029,000	4,058,000	15,847	3,633	3,633	7,266	8,581
이경우	1	본배(서울 용산)	1,400,000	1,400,000	2,800,000	6,556	1,044	1,044	2,088	4,468
최지현	1	본배(서울 서초)	394,000	1,576,000	1,970,000	2,163	0	1,761	1,761	402
한정화	1	본배(서울 양천)	1,151,700	593,300	1,745,000	1,320	531	0	531	789
합계			4,974,700	5,598,300	10,573,000	25,886	5,208	6,438	11,646	14,240
평균			1,243,675	1,399,575	2,643,250	6,472	1,302	1,610	2,912	3,560

IV.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

- 2006년 이후 종부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되어 왔으며, 그 혜택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이 누려왔음.
- 우선 기본 공제액은 2006년 도입 당시 세대별 합산 6억 원에서 현재 인별 합산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음.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의 경우, 인별 기본공제액의 2배까지 공제가 가능함.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왔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시작하여 현재 60%임.

[표 10] 종부세의 변천사

구분	'05년	'06~08년	'09~18년	'19~20년	'21~22년	'23년
과세 방법	인별 합산	세대별 합산	인별 합산	인별 합산	인별 합산	인별 합산
기본공제액 (1세대 1주택)	9억 원	6억 원	6억 원 (9억 원)	6억 원 (9억 원)	6억 원 (11억 원)	9억 원 (12억 원)
과세표준	5억 5천만원 이하~45억 5000만원 초과 3단계	3억원 이하~94억원 초과 4단계	6억원 이하~94억원 초과 5단계	3억원 이하~94억원 초과 6단계	3억원 이하~94억원 초과 6단계	3억원 이하~94억 원 초과 7단계
세율(중과 세율)	1~3%	1~3%	0.5~2%	0.5~2.7% (0.6~3.2%)	0.6~3% (1.2~6%)	0.5~2.7% (0.5~5%)
공정시장가 액비율		80%	80%	85%, 90%	95%, 60%	60%
	노무현 정부 시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정부 시기

-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거나,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종부세를 완화시키고 있음.
 -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자료 (2024.06.26.)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7%, 2021~2022년 69%, 2023년 60%로 낮아졌음.

[표 11] 공시가 시세반영률 변화

		2020	2021	2022	2023	2024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정부	69%	70%	71.5%	69%	69%
	경실련	67%	69%	69%	60%	65%
	차이	2%	1%	2.5%	9%	4%

* 출처 : 경실련,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자료(2024.06.26.)

- 이러한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독과점한 상위 1%에게 돌아가고 있음.

[표 1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2022~2023년) : 개인 1세대 1주택자

	인원(명)			과세액(억원)			평균 과세액(만원)		
	2022	2023	변화 율(%)	2022	2023	변화 율(%)	2022	2023	변화 율(%)
전국	235,336	111,314	-52.70	2,562	913	-64.4	109	82	-24.7
서울	173,576	89,886	-48.2	2,102	791	-62.4	121	88	-27.3
강남 3구	101,616	64,821	-36.2	1,454	538	-63.3	144	83	-42.4
경기	42,611	14,228	-66.6	295	73	-75.2	69	51	-25.8
외 15개 시도	19,149	7,200	-62.4	165	49	-70.5	86	68	-21.6

*출처: 국세청

[표 1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2022~2023년) : 개인 중과세율 적용

	인원(명)			과세액(억원)			평균 과세액(만원)		
	2022	2023	변화 율(%)	2022	2023	변화 율(%)	2022	2023	변화 율(%)
전국	483,454	57,087	-88.2	18,907	1,547	-91.8	391	271	-30.7
서울	154,261	21,191	-88.2	9,323	827	-91.8	391	271	-30.7
강남 3구	35,879	6,648	-81.5	4,063	384	-90.5	1,132	578	-48.9
경기	169,533	16,270	-90.4	5,194	357	-93.1	306	219	-28.5
외 15개 시도	159,660	19,626	-87.7	4390	363	-91.7	275	185	-32.7

*출처: 국세청

V. 경실련 주장

①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 이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 중산층 정책인가?

-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를 완화, 폐지하기 위한 논리로 종부세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함.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8%에 불과함. 따라서 정치권이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대다수 무주택자와 중산층 이하 세대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 아님.

②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다.

- 현재 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투기 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없다며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종부세 도입의 취지는 투기 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찾아야 함. 또한, 도입 직후부터 종부세를 누더기로 만들면서 투기 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예단하기 이르며,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강화해야 할 것임.
- 종부세 완화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움. 2023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 5천억원으로 전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 부동산가액 하락도 영향이 있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 등 후퇴 조치의 영향이 큼. 이로 인해 가뜩이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실제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 주요아파트의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2020년 0.23%에서 2023년 0.1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여 공정과세를 저해하고 자산격차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③ 종부세 완화 시 지방교부금 축소 등 지방재정 악화 우려

- 종부세 전액이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활용되어 왔음. 종부세 완화 시 지방교부금 축소가 불가피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보다 2조 6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됨.
- 현재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강화하려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재산세가 지방세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종부세는 국세로서 견혀, 지방에 교부금 형태로 분배되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걷은 세금이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④ 오히려 형해화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종부세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인별 합산 방식이 이뤄지면서 단독명의자와 단독명의자 간의 기본 공제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기본 공제액이 과도하게 상향되면서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자와 단독명의자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업자 감면 혜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세대별 기본공제액 적용자에 대한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음.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는 공제 금액이 넘는 금액의 60%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도하게 세금 혜택을 줄이는 문제가 있음.

<경실련 주장>

-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당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하라!
- 과세표준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하라!
-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업자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폐지하라!
-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하라!

별첨 1.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조사대상

성명	조사 대상 여부	임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	2024.04.23.~(전 국회의원)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	2024.04.22.~(전 국회의원)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	2024.05.07.~(전 법무부차관)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X	2024.05.10.~(전 대 시민소통비서관)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2023.12.4.~(전 대변인)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	2022.05.10.~(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
이기정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	2023.11.10.~(전 홍보기획비서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	2022.05.10.~(전 검찰총장 비서관)
장순철 대통령비서실 제2비서실장	○	내정(전 시민사회2비서관)
조상명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	2023.12.4.~(대 사회통합비서관)
최진웅 대통령비서실 국정메시지비서관	○	2023.12.27.~(前 靑 연설기록비서관)
이정민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	2024.07.08.~(소청심사위 상임위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	2024.1.9.~(대 부대변인)
김명연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	2024.05.24.~(전 국회의원)
정승연 대통령비서실 정무2비서관	○	2024.05.24.~(與 인천시당위원장)
김장수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	2024.05.24.~(전 국회부의장 정무비서관)
구만섭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	○	2023.10.27.~(행안부 차관보)
이동욱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	2024.05.07.~(행안부 대변인)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X	2024.05.07.~(前 大 인사비서관)
한정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2024.06.03.~(前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최승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1비서관	X	2024.05.24.~(大 부속실 선임행정관)
장순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2비서관	○	2023.12.04.~(大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호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3비서관	○	2024.05.24.~(前 靑 부속비서관)
정혜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X	2024.07.16.~(大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최재혁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	2023.11.27.~(前 제주MBC 대표이사 사장)
하태원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 비서관	○	2024.2.13.~(前 채널A 보도제작팀장)
김용진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	○	2023.1.5.~(與 총무국장)
성태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2024.1.1.~(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2023.12.4.~(前 조달청장)
장상운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	2023.12.4.~(교육부 차관)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	2024.1.25.~(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유혜미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	2024.07.25.~(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양성호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	2024.07.03.~(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	2023.12.27.~(大 국정메시지비서관)
최영해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	2023.05.15.~(동아일보 부국장)
신중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X	2024.07.15.~(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최우석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X	2024.08.05.~(산자부 무역투자실장)
박종찬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X	2024.07.22.~(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정현출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	2024.07.08.~(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길병우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	2024.07.06.~(국토부 도시정책관)
고득영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	2022.11.21.~(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최현석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	○	2024.06.24.~(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	2024.1.8.~(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이창흠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	2024.06.24.~(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신수진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	X	2024.07.08.~(선임행정관)
최원호 대통령비서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	○	2023.07.06.~(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
이경우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 디지털비서관	○	2024.02.25.~(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최선 대통령비서실 첨단바이오비서관	○	2024.02.25.~(이화여대 약학과 교수)
최한경 대통령비서실 인구기획비서관	X	2024.07.25.~(저고위 사무처장)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	2024.07.25.~(질병관리청 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2024.08.12.~(국방부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2022.05.10.~(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2023.09.27.~(前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왕윤중 국가안보실 제3차장	○	2024.1.11.~(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	2023.03.28.~(외교안보연구소장)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	2024.04.08.~(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배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	2023.12.1.~(前 국립통일교육원장)
강재권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	2024.1.26.~(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최병욱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X	2023.10.26.~(국방부 방위정책관)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	2024.02.26.~(前 비바리퍼블리카 CPO)
김상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센터장	X	2023.11.7.~(부센터장)